

요약

영국 감독청은 건전한 보험회사가 사업종료 시 체계적인 계획하에 질서 있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기준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해야 함.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24년 12월, 영국 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gency)은 보험회사가 사업종료 시 시장에서 질서 있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기준안(Solvent Exit Planning Framework)'을 최종 발표함¹⁾
 - 영국 손해보험 시장은 단기보험상품의 비중이 높고 로이즈와 같은 전문 재보험 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Part VII Transfer, 채무조정합의(schemes of arrangement)와 같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 라인의 사업 또는 계약의 인수를 중단하는 런오프(run-off)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음
 - 기존 영국의 보험시장은 진입 규제와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와 같은 운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같은 퇴출에 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임²⁾
 - 자발적 구조조정계획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지급능력이 부실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인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제도(Recovery & Resolution Plans)와는 구분됨
 - 자발적 구조조정이란 지급능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향후 사업모델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잔존 보험계약, 채무 등을 이전·상환하고 인가를 반납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함
- 자발적 구조조정계획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회사가 사업종료 시 체계적인 계획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감독청은 부실 상태가 아닌 지급능력이 있는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이 비용 효율적이며,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시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 사전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또는 전체 자산 매각, 합병, 사업 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 지연 및 자산 급매각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규제 및 평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1) PRA(2024. 12), "Solvent exit planning for insurers"

2) PRA(2023. 6. 28), "Solvent exit planning for non-systemic banks and building societies"

-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구 급증, 예상치 못한 리스크 증가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서비스보상기구는 보험계약자에게 총 13억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자발적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을 문서화하여 주기적으로 감독청에 제출해야 하며, 자발적 구조조정 실행 기준을 충족하거나 감독청이 요청할 경우 세부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함

- 본 제도는 약 370개의 모든 보험회사들³⁾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Solvent Exit Analysis)에는 7개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 3년에 한 번 또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업데이트해야 함(표 1) 참조)
- 보험회사는 자발적 구조조정 실행 기준을 충족하거나 감독청이 요청할 경우, 회사가 설정한 기간 내에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타임라인을 작성하여 세부 실행 계획(Solvent Exit Execution Plan)을 제출해야 함

〈표 1〉 자발적 구조조정 분석 필수 항목

항목	내용
실행 액션	사업 및 자산 매각, 보험 갱신권 판매, 보험 부채의 상환 및 이전 등에 관한 옵션 설정
실행 기준 지표	지급여력비율, 자본 부족, 이익 및 언더라이팅 손실, 수입보험료 감소 등 재무적 지표와 운영 어려움, 직원 이탈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잠재적 장애요인 및 위험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담보화 요구, 미충족된 부채(확정급여형 연금, 우발적 부채)의 현실화, 추적 불가능하거나 연락 두절된 보험계약자 등 잠재적 장애요인과 위험을 명시
필요 자원과 비용	자발적 구조조정 실행 시 필요한 금융(자본, 재보험, 자금 조달, 위약금 등) 자원과 비금융(외부 전문가 서비스, 핵심 직원, IT 인프라 등) 자원을 명시
커뮤니케이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보험계약자, 규제 당국, 신용평가기관, 재보험사 등)를 명시하고 소통 시점 및 전략을 명시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자발적 구조조정 계획 검토 및 승인, SEEP 작성, 그리고 자발적 구조조정 실행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총괄할 선임 관리자 지정
검증	선임 관리자와 같은 내부 감사나 외부 전문가는 위 항목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필요

자료: PRA(2024. 12), "Solvent exit planning for insurers"

○ 한편, 감독청은 자발적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부담 과중,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우려를 수렴하여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 중 97%가 중소형 규모로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작성 및 지표 모니터링에 따른 시간 소요와 운영 비용이 부담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감독청은 기업의 규모와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실행 계획 작성 기간이 기존에 제안한 1개월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각 회사가 기간을 설정하도록 수정함
- 자발적 구조조정계획 작성 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자본 관리 계획,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제도 등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감독청에 규제를 받는 영국 SolvencyII 회사, 비지침회사, 로이즈 협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수동적 런오프, 해외 보험사의 영국 지점, 로이즈 관리대리인은 제외함